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19 -
번호	158

제출년월일 : 2019년 11월 13일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1. 제안이유

보육의 공공성강화 및 국공립어린이집 보육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을 무상임대하여 구립어린이집으로 확보하고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제20조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가칭)신촌그랑자이어린이집 운영사무, (가칭)서교동 청년주택어린이집 운영사무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근 거 :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4조의2

마포구 보육조례 제20조

신촌그랑자이 외 1개소 공동주택 관리동 내 구립어린이집 신규 설치(운영)계획

○ 필요성 :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

다. 위탁사무 내용 및 범위 : 구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무

라. 위탁시설 개요

○ 위탁시설 현황

구 분	위 탁 대 상 시 설	
시설명	(가칭) 신촌그랑자이어린이집	(가칭) 서교동 청년주택어린이집
소재지	마포구 대흥동 12 신촌그랑자이 관리동 1~2층	마포구 서교동 395-43 서교동 청년주택 1층
규모(㎡)	581.4	455.4
예정 정원 (명)	70	60
확충유형	신규 - 공동주택 관리동 - 무상임대(무기계약)	
위치도		

마. 위탁기간 : 개원일로부터 5년

바. 수탁자 선정방식 :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400백만원(국비 120백만원, 시비 220백만원, 구비 60백만원)

○ 산출근거 : 어린이집 정원에 따라 산정

아.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조례 제20조에 따라 구청장은 구립 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음
- 보육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효율적 시설운영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4조의2
-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조례 제20조 ~ 제22조

나. 기타사항

- 추진일정
 - 2019. 12. :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체 선정 방침 수립 및 공고
 - 2020. 1. :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 2020. 2. : 무상임대 협약 및 위탁운영 계약 체결
 - 2020. 2. ~ 3. : 리모델링공사 및 기자재구매 방침 수립 및 시행
 - 2020. 4. ~ 5. : 구립어린이집 개원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①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제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 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위탁신청서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⑨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립어린이집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4조의2(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제 선정관리 기준) 법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제 선정관리 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제20조(위탁계약 등)

-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구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 ② 구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제2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위탁대상자를 선정하며, 선정된 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구립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구립어린이집의 보호와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제21조(수탁자 모집)

- ① 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구립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 수탁자 모집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에 관한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은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른다.

제22조(위탁기간)

- ① 구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단, 원장의 잔여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평가 결과 운영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간 만료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